

제2899호
2022. 1.26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 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
전화 : 3396-4951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고 시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4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고 시
 - 제2022-4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
 - 제2022-5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
 - 제2022-6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4
 - 제2022-7호 :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6
- 공 고
 - 제2022-53호 : 2022년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 8
 - 제2022-68호 : 건축허가 제한 공고 9
- 기 타
 - 제2022-1호 : 만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(정정) 11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 (지번주소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 (효력발생일)	도로명주소 부여사유
		도로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232-1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4길 7	2022. 1. 26.	신청에 따라 퇴계로6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.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-641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라길 1	2022. 1. 26.	신청에 따라 동호로11라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

-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5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4길 9	2022.1.26.	건물 철거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라길 1	2022.1.26.	건물 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6호

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의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1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지정취지: 「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에 따라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우리 구 주민과 통행하는 모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지정내용

- 금연구역 명칭: 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(바비엡3 인접 도로-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 연장 지역)
- 소재지: 서울 중구 통일로 86 (순화동)
- 지정 번호: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제31호
- 지정 장소 및 범위: 아래 그림, 연장거리 120m



3.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: 2022년 2월 1일

4.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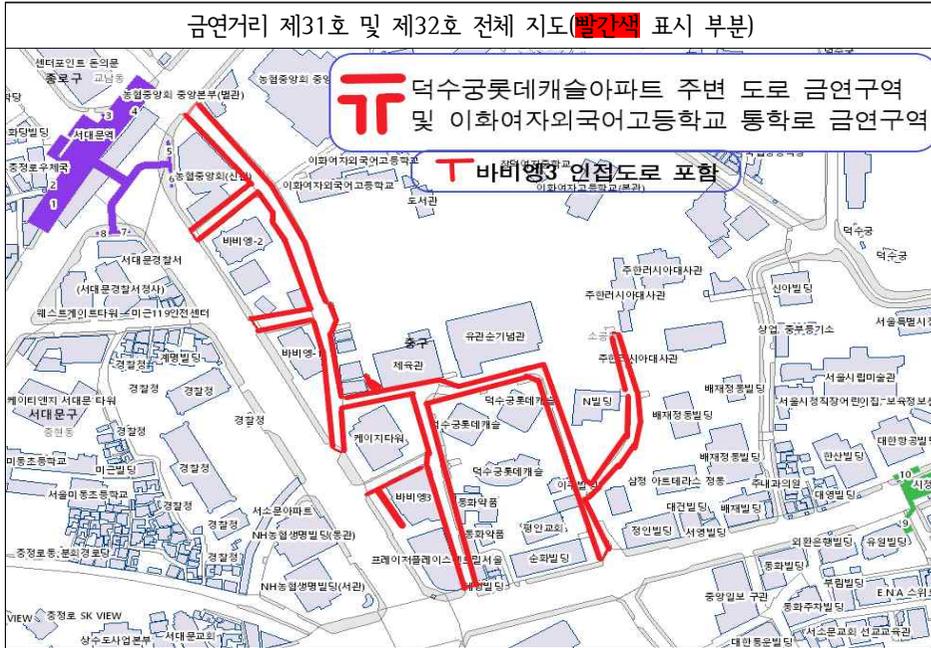
- 홍보 및 계도기간: 2022. 2. 28.까지
- 과태료 부과일: 2022. 3. 1.부터
- 과태료 부과금액: 10만원

5. 고시방법: 구청 홈페이지, 구보, 게시판 등

6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사업 담당(☎02-3396-5672)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[기타 참고 사항]

금번 지정되는 “바비엡3 인접 도로 금연구역”은『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』 금연구역과 『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교 통학로』 금연구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전체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7호

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
『공직선거법』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

일반명단 해당 작성비용	전산자료 복사본 비용	비 고
① 일반명단 A4용지 제공 : A4용지 1매 기준 58원	전산자료 복사본 CD 제공 : (490원X디스크 개수)+(35원X면수)	
② 라벨용명단 제공 : 라벨용지 1매 기준 340원		

세대주명단 작성비용 산출내역

□ 일반명단 제공

항 목	금 액	산 출 기 초
계	58원	A4용지 1매당 작성 비용
용 지 대	8원	○ 일반 복사용지(A4, 1BOX당 19,000원) - 19,000원÷2,500매(파지율 3%) = 8원
소모품비	15원	○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165,160원(15,000매/A4) 드럼111,210원(30,000매/A4) ○ (330,320원+111,210원)/30,000매 = 15원(A4 장당)
기타경비	35원	○ 전기료, 감가상각비, 인건비 등 기타 소요비용 /A4용지 1매 작성

□ 라벨용명단 제공

항 목	금 액	산 출 기 초
계	340원	A4용지 1매당 작성 비용
용 지 대	290원	○ 일반 복사용지(라벨 14칸, 1팩 28,160원) - 28,160원÷100매(파지율 3%) = 290원
소모품비	15원	○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165,160원(15,000매/A4) 드럼111,210원(30,000매/A4) ○ (330,320원+111,210원)/30,000매 = 15원(A4 장당)
기타경비	35원	○ 전기료, 감가상각비, 인건비 등 기타 소요비용 /라벨용지 1매 작성

□ 전산자료 복사본 제공

항 목	금 액	산 출 기 초
계		(490원 × 디스크 개수) + (35원 × 면수)
C D	490원/1개	○ CD-R 700MB 1개당 490원
기타경비	35원	○ 전기료, 감가상각비, 인건비 등 기타 소요비용 /A4용지 1매 작성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53호

2022년 코로나19 입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

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(질병관리청고시 제2020-10호, 2020. 9. 14.)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19 입시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예방접종비용

1. 코로나19 입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

구 분	시행비1)	백신비2)
지원금액	19,420원	-

- 1)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은 감염병예방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-지방비 공동부담원칙 하에 운영
- 2)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백신비 발생하지 않음

2. 시행일 : 2022. 1. 1.로부터 시행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68호

건축허가 제한 공고

중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「건축법」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건축허가 등 제한

가. 제한목적 :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

나. 제한근거 : 「건축법」제18조제2항

다. 제한기간 :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(단,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)

라. 제한지역 : 중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

마. 제한대상 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

- 1) 「건축법」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
- 2) 「건축법」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
- 3) 「건축법」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(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)
- 4)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- 5)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단, 제한대상 1), 5)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(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,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)에 한함

바. 제한제외 대상

- 1)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(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)
 - 2) 「건축법」제14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
 - 3) 「건축법」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
 - 4) 「재난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
- 단, 제한제외대상 1)-4)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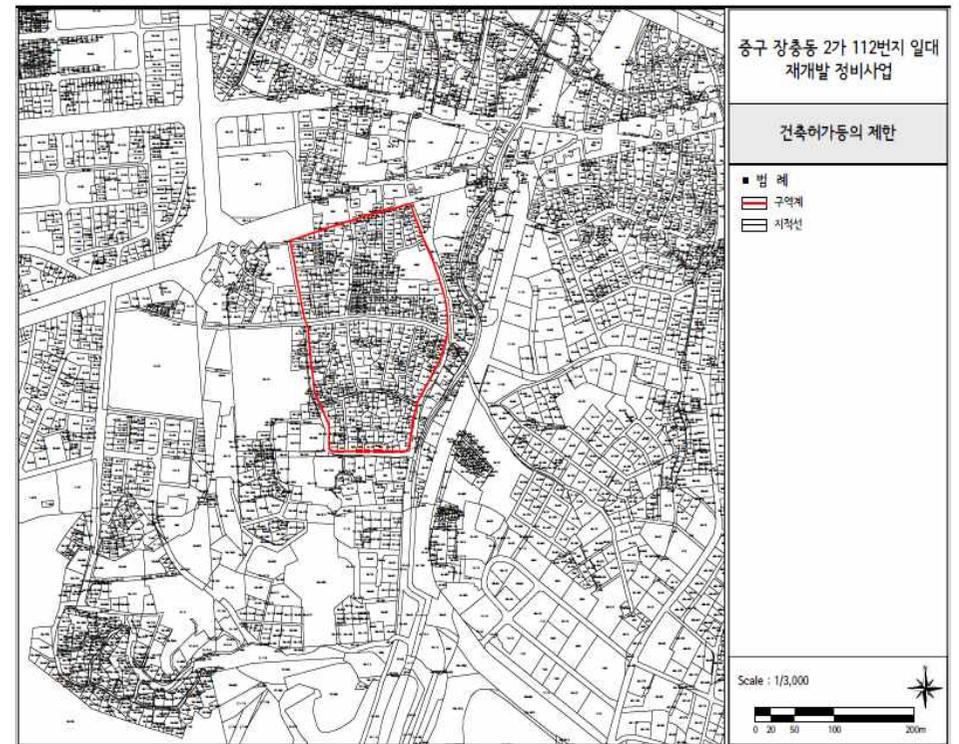
2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3. 안내사항
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,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붙임. 지형도면(중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)



기 타

◎ 만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2-1호

만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(정정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87호(2007.10.25)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중구고시 제2009-38호(2009.08.13), 중구고시 제2010-36호(2010.05.27), 중구고시 제2011-43호(2011.7.14), 중구고시 제2012-86호(2012.9.27), 중구고시 제2013-103호(2013.11.21.), 중구고시 제2014-80호(2014.9.25)로 정비계획·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되고, 중구고시 제2010-43호(2010.06.16)로 사업시행인가, 중구 주택과-16534호(2010.09.13), 중구고시 제2012-9호(2012.01.20), 중구 주택과-19038호(2012.06.29.), 주택과-106052호(2012.11.22.), 중구고시 제2013-118호(2013.12.31.), 주택과-21305호(2014.6.26.), 주택과-33400호(2014.10.13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, 중구고시 제2017-62호(2017.8.9.)로 공사완료 고시, 중구고시 제2012-65호(2012.7.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중구고시 제2014-83호(2014.10.15.), 중구고시 제2021-132호(2021.11.10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만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-1호(2021.11.22.)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 고시, 조합고시 제2021-2호(2021.12.15.)호로 이전내용 정정고시하였는 바, 고시내용 중 일부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

2. 정정고시와 관련한 서류는 만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소(02-362-278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
만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최성규

1. 정정사항

가. 대상 : 확정 토지 이전내역 중 소유자 지분면적 정정

나. 사유 : 당초 이전고시(2021.11.22., 조합고시 제2021-01호)에 확정될 토지(만리동2가 283번지)의 소유자별 지분면적 착오 기재

다. 정정내역

- 확정될 토지의 지분 정정

확정될 지번	소유자	소유지분면적 (㎡)		비 고
		당 초	정 정	
만리동2가 283번지 (시민속사료)	정명*	94.643	383.4㎡의 676분의 145	• 종전 토지 (만리동2가 176-188, 207-5) 소유자별 지분 비율 착오 사항 정정
	정천*	288.757	383.4㎡의 676분의 531	

-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종류

구분	계	종 류 별				비 고
		가처분	근저당	압류	가압류	
당초	337	3	328	3	3	-조합원(45-4오인환외1,218-46 김남필)근저당권말소
정정	355	3	334	11	7	-시민속사료(176-188,207-5)소유권 이외권리(압류8,가압류4,근저당권8) 추가
증·감	18		6	8	4	

※ 세부내역 : 조합사무소에 비치한 이전조서(정정) 참조

2. 기타사항 : 만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-1호(2021.11.22.) 및 조합 고시 제2021-2호(2021.12.15.) 내용과 동일